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뀜 18 · 신설 4 · 삭제 1 · 번호 변경 3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09/compare?from=521&to=523>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35:0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2동 26-21 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소재) 본 국제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2동 26-21 번지 삼육대학교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원은 다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해외대학과 맺고 실제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5.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제3조(목적) 본원은 다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6.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7. 자매대학에 어학연수단 파견 8. 재학생을 위한 유학, 어학연수 상담 9.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10. 외국인 교수·학생의 출입국 업무 11. ITP 토폴시험 추진 12. URP 업무 13. 기타 본원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ITP 토폴시험 추진 6. URP 업무 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제5조(구성) 1. 본 원에 원장, 국제교류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2. 본 원내에 국제교류부를 둔다.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교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제6조(임명) 원장 및 국제교류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명) 원장 및 교무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국제교류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국제교류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과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류부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 소집은 위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④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사항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교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장이 맡는다.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⑤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본원의 교육은 본교 재학생과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재학생 과정의 학사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한 학기는 16주 강의로 구성되며,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9조(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본원의 교육은 본교 재학생과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재학생 과정의 학사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한 학기는 16주의 강의로 구성되며,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0조(학과, 정원 및 입학) 본원에 설치하는 학과, 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학과, 정원 및 입학) 본원에 설치하는 학과, 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지원절차와 등록금) 특별과정(영어회화, 또는 Total Immersion English Program)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소정 기일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폐강 또는 본 대학의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폐강 또는 본 대학의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출석) 영어회화는 한 학기에 강의 9회와 Lab 3회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낙제(FA)로 처리되며, 여름, 겨울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영어회화는 한 학기에 9회(on-line 수업, off-line 수업 각각)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낙제(FA)로 처리되며 여름,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재수강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학업성적 평가) <u>학업성적의 평가는 영어회화(원어민 교수) 90%, Lab 10%로 합산하여 A+, A, B+, B, C+, C, D+, D, F, FA 등으로 구분하고, Lab 수업의 성적이 FA일 경우 영어회화 전체 성적은 FA가 된다. 그등급은 다음과 같다.</u> <u>등급</u> <u>점수</u> <u>등급</u> <u>점수</u> <u>A+</u> <u>95 - 100</u> <u>C</u> <u>70 - 74</u> <u>A</u> <u>90 - 94</u> <u>D+</u> <u>65 - 69</u> <u>B+</u> <u>85 - 89</u> <u>D</u> <u>60 - 64</u> <u>B</u> <u>80 - 84</u> <u>F</u> <u>59 이하</u> <u>C+</u> <u>75 - 79</u> <u>FA</u> <u>결석에 의한 낙제</u>	<삭제>
제14조(여름·겨울 강좌) <u>학업성적이 F 또는 FA 인 학생은 해당학기 다음 방학중에 개설하는 여름 또는 겨울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u>	제14조(시험) <u>본 교육원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행한다.</u>
<신설>	제15조(학업성적 평가) <u>영어회화(원어민 교수) 평가는 A+, B+, C+, D+, F, FA 등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u> <u>등급</u> <u>점수</u> <u>등급</u> <u>점수</u> <u>A+</u> <u>80-100</u> <u>D+</u> <u>45-56</u> <u>B+</u> <u>69-79</u> <u>F</u> <u>0-44</u>

현행	개정안
	<u>C+</u> <u>57-68</u> <u>FA</u> <u>결석에 의한 낙제</u>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점 45점(B+ 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점 45점(B+ D+)는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신 설>	제16조(계절학기) <u>학업성적이 F 또는 FA인 학생은 해당학기 다음 방학 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u>
제15조(재정)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본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계) 본원의 <u>예산, 결산은 총장이 집행하며</u>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제1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제18조(지원 절차 및 등록금)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u>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할 경우 한국어과정에 납입한 금액은 등록금으로 대치받을 수 있다.</u>	제2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21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20조(학사일정 및 수업) 한국어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학사일정 및 수업) 한국어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제23조(환불 및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제22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출입국 보고)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이탈신고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은 본 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개정 절차) 본 규정은 본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삼육대학교 내"를 "삼육대학교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목적) 본원은 다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2. 언어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3. 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ITP 토폴시험 추진
6. URP 업무
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본원에 원장, 교무부장,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제6조 중 "국제교류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교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장이 맡는다.
-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 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⑥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본원의 교육은 본교 재학생과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재학생 과정의 학사일정은 본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한 학기는 16주의 강의로 구성되며, 일반인 교육과정(특별과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중 "본 원"을 "본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절차와 등록금) 특별과정(영어회화, 또는 Total Immersion English Program)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소정 기일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등록금은 폐강 또는 본 대학의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출석) 영어회화는 한 학기에 9회(on-line 수업, off-line 수업 각각)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낙제(FA)로 처리되며 여름, 겨울방학 계절학기에 재수강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험) 본 교육원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학업성적 평가) 영어회화(원어민 교수) 평가는 A+, B+, C+, D+, F, FA 등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등 급

점 수

A+

80-100

D+

45-56

B+

69-79

F

0-44

C+

57-68

FA

결석에 의한 낙제

-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점(45점(B+ D+))은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 * 80점 이상은 절대평가하며, 79점(45점(B+ D+))은 상대평가로 하되 B+ 50%, C+30%, D+20%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계절학기) 학업성적이 F 또는 FA인 학생은 해당학기 다음 방학 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정)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계) 본원의 예산, 결산은 총장이 집행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원 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원절차 및 등록금) 입학할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출입국 보고)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이탈신고 한다.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개정 절차) 본 규정은 본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